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계444	(건파번호 25-4193)	건설규정 조항 부시장건설사합
처리기간	1528 시 장		
시행일자	1976. 11. 13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시장	전결	법무담당관(구심안심사) 법무심사관
	도시정비과장	2/1/19	
	도시계획과장	지역계획계장	
기안책임자	장석효	76. 11. 5	조

경수참	유신조	각안참조	발신	시장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                검열 1976. 11. 19 도시계획과장             </div>
-----	-----	------	----	----	---

계 목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신설결정및 일부변경

제 1안 내부결재  
1. 당시 북악산 공원 외 4개소가 건설부고시 제 169호(76. 10. 28)로 신설결정및 일부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 
2. 도시계획법 제 10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

(73. 4. 4)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3 조정에 의거 지적승인코자 하오니 결재 바랍니다  
가 공원 신설결정

공원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	판인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월곡아동공원	생북로월곡동 774	-	-	784	신설	
아현아동공원	바포차아현동 606	-	-	740	"	

나. 공원 변경조서

공원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	판인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육신 묘지공원	관악로 노량진동 185	40887	증 8461	49348	변경	

북악산 공원	성북구 성북동 330 일대	1879.705	증 954	1880.659	변경
신림 "	관악구 신림동 646 "	395.238	감 10.597	384.721	"
			고시안 심사	1976.11.11	제 316 호
제 2안 고시안			심사자	합계계장	법무관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홍	홍	홍

도시계획시설(공원) ~~신설결정 및 일부 변경 결정~~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69호(76.10.28)로 신설결정 및

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

도시계획비 ~~제 10조 및 제 13조와~~ ~~제 10조 및 제 13조와~~

~~제 10조 및 제 13조와~~ ~~제 10조 및 제 13조와~~ 지적승인

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

가 공원 신설 결정 ~~결정~~ 지적승인

공원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월곡아동공원	성북구 월곡동 77-4	-	-	784	신설
아현아동공원	마포구 아현동 606	-	-	740	"

나 공원 변경 ~~결정~~ 지적승인

공원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육신 묘지공원	관악구 노량진동 185	40867	증 3461	44.328	변경
북악산 공원	성북구 성북동 330-83	1879.705	증 954	1.880.659	"
신림 공원	관악구 신림동 646 일대	395.238	감 10.597	<del>384.721</del>	"

도면은 서울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

와 관할구청 시인용사실에 보합

제 3안

136

수신: 건설부장관

제목: 동 건

1. 건설부고시 제 169호(76.10.28)로 신설결정 및

일부 변경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

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  
첨부 : 표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4안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신 : 시장(과장)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이 건설부고시 제169호  
(76.10.28) 로 신설결정 및 일부 변경 고시된 사항을 별첨  
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 승인 하시기 통보  
하니 (하오나) 증명 발급 및 관련 업무에 차질 없기 바랍  
(바랍니다)

수신처 : 성북구청 마포구청 관악구청

공원과 관재과

첨부 : 표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5안

수신 : 총무처 장안 (시: 문화공보실장)

발신 : 시장(과장)

제목 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고시 사항을 관(시)보에  
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 관(시)보 게재 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 고시

나 관(시)보 게재 구분 : 고시

다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첨부 : 외문 사본 2(1)부 끝

가 동 (배재학당) (七七번지)

추천 일천이백무지일

